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10999 판결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4. 9.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7,203원 및 그중 41,617,127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7.9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소명사항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방혜미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채권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E (구상호: 주식회사 F)은 채권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채무자 D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채무자 주식회사 E (구상호: 주식회사 F)은 채권자와 2021년 02월 08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D은 이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아 래 -

대출원금: 금 63,990,000원

이자율: 연 4.94%

연체이자율: 연 7.9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72개월

3. 기한이익의 상실

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참조)

나. 위 계약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E (구상호: 주식회사 F)은 계약성립 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아래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 D은 채무자 주식회사 E (구상호: 주식회사 F)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채권내역 (기준일 2023년 01월 10일)

미회수 원금 (A)	48,069,423 원
이자/연체이자(B)	606,970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B+C)	48,676,393 원

5. 결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8,676,393 원 및 이 금원 중 금 48,069,423 원에 대하여 2023년 01월 1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7.9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6. 회사의 지정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지점의 경우도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이고 계약자체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무이행지를 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467조 2항 단서) 채권자의 지정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8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채권은 관리지점이 귀원 관할인 여신관리 서울센터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이행지는 여신관리 서울센터이며, 이 지점이 귀원 관할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소명사항

1. 2023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G 자동차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회사에 배당(배당액 금10,846,968원+집행비용 금1,445,062원+이자 금116원=12,292,146원)되었으며, 원고회사는 배당 익일인 2023년 1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상기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 상기 배당된 금원은 2022년 11월 14일분부터 2023년 6월 14일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법적조치비용 포함)하여 결재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회차별 수납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회사는 배당금을 수령한 당일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099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에 배당이후 잔여원금에 대하여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배당금 입금처리 이후 법원으로부터 송달료등이 추가 입금되어 이에 근거한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갑 제11호증,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변경된 청구원인

1. 기초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 (구상호: 주식회사 F)에게 2021년 02월 08일 금 63,990,000 원에 대하여 연 4.94%의 이자를 가산하여 7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고, 매월 14일자에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7.94%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피고의 지체사실

그 후 피고등은 위 대출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체하여 위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 03월 12일 기준 중도상환금 43,987,203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03월 12일 기준 중도상환금 43,987,203 원 및 이 중 원금 41,617,127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의 익일인 2024년 03월 1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인 연 7.9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4. 회사의 지정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지점의 경우도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이고 계약자체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무이행지를 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467조 2항 단서) 원고의 지정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8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채권은 관리지점이 귀원 관할인 서울센터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이행지는 서울센터이며, 이 지점이 귀원 관할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